

목차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0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0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08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08
제5관	공제료의 납입	10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12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3

특별약관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16
2.	도급업자 특별약관	17
3.	생산물배상 특별약관	19
4.	전문직업인배상 특별약관	21
5.	E-Biz배상 특별약관	23
6.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5
7.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26
8.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7
9.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28
10.	공제료분납 특별약관 Ⅱ	29

보통약관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가입대상 및 목적)

- ① 이 공제의 가입대상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합니다.
- ②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손해보험사와 보험업무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제특례배상책임공제사업업을 시행합니다. 규제특례배상책임공제사업은 관련법에 따라서 규제자유특구배상책임공제사업,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공제사업으로 구분해서 약관, 증권, 청약서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공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조합과 보험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그 책임하에 수행합니다.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조합 사이에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은 아래를 말합니다.】

- 행정규제 기본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구법)
- 산업융합촉진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혁신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 보상한도액: 조합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라.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마.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바. 대위권: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조합이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나. 범죄행위: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합니다.

라.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마.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물적손해를 포함한 재산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단, 전자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라 함은 특허법 제127조에 규정된 행위를 말합니다.

사.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중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아.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한다.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조합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보험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보험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공제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가'목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실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나.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 (이하 "후유장애"라 한다) 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하나의 사고로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조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과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과 제1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다. 제1호 '다' 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제1호 '다' 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3.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제3조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나. 제3조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다. 제3조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4. 제1조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 등에서 1호의 금액과 상이한 보상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용하며, 관련 법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경우, 사고일 기준의 법 및 시행령 등을 따릅니다.
- 다만,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공제나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다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항과 보험회사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공제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로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로(이하 '제1회 공제로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로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로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조합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공제자
 5. 보상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 ①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공제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 공제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조합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조합은 다른 공제 및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조합은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공제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조합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 ①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상담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 ①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조합 또는 보험회사(공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특별약관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항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도급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공제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
 - 나.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20.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

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작업가 전체작업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생산물배상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항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의 양도를 불문하고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생산물】

「생산물」이란 피공제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이하「완성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은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2.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 「피공제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 (1) 피공제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 (2) 피공제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 (3)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행정규칙 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1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줍니다.
14.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15. 아래에 기인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공제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 나. "피공제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다.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에 기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 (1) "피공제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2)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손상재물】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피공제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 (1) ①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피공제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② 피공제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 (2) ①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피공제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② 피공제자의 계약성 조건에 대한 이행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전문인배상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증권에서 정한 전문직업 서비스나 업무를 제공 중에 과실, 실수, 태만,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피공제자의 범위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 및 피공제자에게 소속된 직원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행한 아래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손해 단, 피공제자는 각 특별약관의 제2조(피공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 가. 고의 또는 사기
 - 나. 범죄행위, 위법행위, 불법적 탈루행위
 - 다. 악의적, 불법적, 의도적인 부정직한 행동으로 생긴 손해 또는 불법적, 의도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2. 피공제자가 이 공제계약의 다른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청구로 생긴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및 방사선을 쬐거나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8. 석면 침착증으로 생긴 법적인 책임과 석면 및 석면제품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존재, 생산, 취급, 처리, 제조, 판매, 배급, 저장, 사용에 의해 생긴 손해 및 암을 포함한 질병
9.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장대상업무가 아니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 또는 서비스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
10. 피공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손해나 공제기간 중 퇴사 또는 탈퇴한 피공제자의 퇴사 또는 탈퇴 이후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손해
11. 피공제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 수행한 업무로 생긴 손해
12. 벌금, 과징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
13. 아래에 의하여 피공제자에게 가중된 법적배상책임으로 생긴 손해
 - 가. 피공제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가중시키는 계약, 합의, 약정
 - 나.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품질 보증,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자담보 제공
 - 다. 시험·인증·심사·평가 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특정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품질보증으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단, 해당기관의 보장대상업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인증·심사·평가 결과는 특정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품질보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4. 손익 손실, 매출 손실, 생산 손실, 비즈니스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예상되는 이익 또는 절감 손실과 같은 결과에 따른 손해
15. 명예훼손, 인격침해, 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17.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내용을 알리거나 누설하여 생긴 손해
18. 연령, 출신, 성별, 국가, 종교, 결혼 여부 등과 관련한 차별로 생긴 손해
19. 피공제자의 지불불능이나 파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20. 피공제자나 피공제자 관련된 자에 의하여 판매, 공급, 제작되는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21.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22. 피공제자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사용하는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차량으로 생긴 손해
24. 피공제자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매체를 포함합니다)의 도난, 분실 또는 파

손 손해 및 이에 따른 재제작비용 손해

- 25. 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나 비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세금이나 공과금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한 손해
- 26. 업무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 또는 시간을 초과하여 생긴 손해
- 2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또는 어떠한 물질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오염 및 오염제거를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 28. 공제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손해 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한 손해 및 공제 가입 이전에 유효한 다른 공제계약의 보험자에게 알린 상황과 관련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E-biz배상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합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장지역 내에서 피공제자가 피공제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 이하 「행위」라 합니다)에 기인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이란 아래를 말합니다.】

-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컨설팅, 보수, 공급, 설치, 관리 및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 인터넷에서의 온라인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의 제공
- 인터넷 사이트의 설계, 구축, 운영, 관리 및 광고
- 전자메일 또는 호스팅 서비스
- 채팅방과 게시판의 유지 및 관리
- 인터넷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인증서의 설치, 관리 또는 유지
- 피공제자와 제3자간의 거래행위,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
-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로의 접속수단 제공

제2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피공제자의 범위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 및 피공제자에게 소속된 직원을 말합니다.

단, 각각의 업무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4.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에게 아래에 의하여, 또는 아래를 위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 가. 다른 피공제자
 - 나. 피공제자를 대리하거나 피공제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체
 다만, 상기 가목, 나목이 피공제자의 고객으로서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보장합니다.
6. 국가 무역관련기관 또는 국가 통신관련기관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단, 그러한 기관이 피공제자의 고객으로서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보장합니다.
7. 이 계약의 공제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8.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지원 또는 구성하는 통신선, 데이터 전송선 또는 여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9. 특허권 침해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0. 증거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12. 직·간접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포르노, 섹스물 또는 외설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3. 위성의 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4. 결함 있는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15.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및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6.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7.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피공제자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조사하여 구하지 않음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18.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코드(바이러스)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조사하여 구하지 않음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7.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9.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10. 공제료분납 특별약관 II

제1조(공제료의 분납)

-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2조(공제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공제료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공제기간동안 이 계약의 공제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공제료는 변경적용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약관 및 특별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공제의 경우 상해공제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공제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